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40
----------	------

2017년 8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년 8월 14일, 문영민 의원
2. 회부일자 : 2017년 8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문영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 인용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조항별 신·구 대비표>

조항 구분	현행	개정안
제5조제5항	1차에 한하여	한 번만
제14조제5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

2.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개정안에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공공주택 특별법」” 으로 변경(안 제14조제5호 관련)하려는 것은, 지난 2015년 8월 28일에 개정(2015년 12월 29일 시행)된 법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인바, 동 개정 내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조항(제5조제5항 관련)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 의미가 있고,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0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발 의 자 : 문영민 의원(1명)

찬 성 자 : 유광상, 김인호, 황준환,
김상훈, 최판술, 김제리,
이복근, 장인홍, 강구덕,
김혜련, 송재형 의원(11명)

1. 제안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제14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 확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u>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u>」 제37조의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p> <p>6. ~ 10. (생략)</p>	<p>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한 번만</u>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 확보)</p> <p>-----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공공주택 특별법</u>」 제37조-- ----- -----</p> <p>6. ~ 10. (현행과 같음)</p>